

##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

의안 번호	155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9. 5. 30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정책 관련 시·군·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「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」에 대하여 중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 적(안 제1조)
- 나. 기 능(안 제2조)
- 다. 구성 및 임원(안 제3조~제5조)
- 라. 회의 및 의결(안 제6조~제9조)
- 마.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(안 제10조, 안 제11조)
- 바. 경비부담 및 회계보고·결산(안 제12조, 안 제13조)
- 사. 규약개정 및 운영세칙 등(안 제14조~제16조)

### 3. 근거법규: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

### 4.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: 따로 붙임

##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

제1조(목적)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·군·구(이하 “지방자치단체”라 한다)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,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.

1.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
2.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3.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, 연구,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
4.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, 시·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
5.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
6.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협의회는 “별표”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,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

제4조(임원)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, 수석부회장 1명,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둔다.

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- 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,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선임한다.
- ④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.
-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.

제5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총회 및 의결)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,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-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-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총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.
- ⑥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 또는 국·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,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.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의안의 제출)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.

제8조(안건의 배부)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.

제9조(의견의 청취)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의결과에 대한 조치)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실무협의회 등)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및 시·도 교육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.

10 (제216회-행정자치위제4차부록)

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,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.

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.

제12조(경비부담)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,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3조(회계보고 및 결산)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협의회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,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(규약 개정) 이 규약의 개정은 총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5조(운영세칙)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제16조(가입 및 탈퇴)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.

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,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.

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, 협의회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다.

## [별표]

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(제3조 관련)

□ 회원도시 현황: 48개 기초지방자치단체

(2019년 5월 현재, 지방자치단체 건제순)

지 역	지 방 자 치 단 체 명	비 고
서 울	종로구, 용산구, 성동구, 광진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노원구, 은평구, 서대문구, 마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구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,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, 강동구	24
부 산	북구	1
인 천	미추홀구	1
광 주	서구	1
대 전	대덕구	1
경 기	수원시, 고양시, 안산시, 안양시, 화성시, 의정부시, 시흥시, 광명시, 오산시, 여주시	10
강 원	원주시, 홍천군	2
충 북	보은군	1
충 남	공주시, 논산시, 당진시	3
전 남	여수시, 순천시, 곡성군, 구례군	4

## 근거법규

### 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의회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